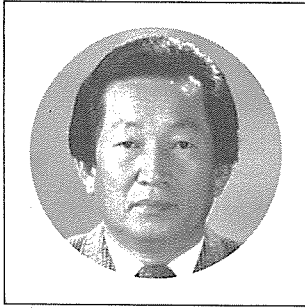


우루과이 라운드 農産物협상과 韓國농업



權元達
〈忠北大農大 교수〉

한국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업규모의 영세성, 농업인구의 감소, 농산물 가격파동, 누적된 농가부채로 농업경영이 안정되지 못하고 국외적으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수산물 수입개방문제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결정에 따라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할 때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선진국의 관세혜택을 더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7월 23~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위원회는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상당한 논란을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계무역질서의 새로운 질서정립을 위한 GATT의 여덟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 있었던 각료선언에 따라 개시되었으며, 금년말을 협상시한으로 잡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의 목적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계를 확립하고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GATT규범의 제정과 농업보호 및 지지수준의 상당한 부분을 감축하여 대등한 무역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주요협상의제는 현행 관세의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식품위생, 동식물검역 등 무역

규제효과를 최소화하여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고 공정한 무역실현을 위해 농업보조금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안보, 고용안정, 환경보전, 지역개발 등 수입국에 대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유지를 인정하며 농업구조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특별우대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그룹의장인 「드쥬」의장이 제시한 합의초안은 농산물 교역 자유화의 기본원칙,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실질적인 협상은 시작도 못하고 각국의 보고와 입장표명으로 끝났다.

그러나 연내 협상타결이라는 일정하에 10월 1일까지 각국이 협상기초자료를 제출하고 10월 8일부터 회의가 진행되며 10월 15일까지 각국의 시장개방방안을 제출하고 11월 15일까지 협상초안 완성, 12월초에 각료회의에서 협정조인하도록 일정이 짜여있어 농산물 수입국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내의 통상여건상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89년 4월 243개 농수산물에 대해 '89~'91년기간중 수입자유화 일정을 예시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90년의 80.3%에서 '91년

에는 84.9%가 된다.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은 국내생산이 미미하여 농가소득에 영향이 적고, 국내공급이 부족하고, 경쟁이 가능하고 농가에 영향이 적은 품목들이다.

그러나 농업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사과, 배,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제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유보된 농수산물은 406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 유보된 품목에 대한 예시계획도 '91년 3월('92~'94), '94년 3월('95~'97) 두차례에 걸쳐 제시하도록 국제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킬 것은 지키고 개방할 것은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상여건은 농산물 수입국으로서의 위치, 수출 주도형 경제유지, 국내농업보호를 위해 최대한 예외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

우리의 협상기본목표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과 농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며 국내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즉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수입국들의 최대 관심사인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인 식량안보, 고용안정, 국토 및 환경보전, 지역 사회개발과 같은 농업보호조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적응할 수 있는 계획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농업구조조정을 통해 합의사항이 이행되더라도 장기간의 유예기간과 정책선택의 자율성을 부여받는 일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칠 예상효과는 치명적으로 보여진다. 국제무역환경으로 볼때 농산물에 대한 점진적인 수입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며 '97년에는 몇개의 품목을 제외하면 완전 자유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규제조치가 따를 것이므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협상에서 합의될 관세상당액과 보조금 감축은 대략 10년 정도의 이행기간이 부여될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하여 농산물수출국과 EC와 일본, 한국,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간에 의견대립이 심화되어 농산물 협상타결은 불투명한 전망이다. 특히 「드루」의장의 협상초안이 부분수정을 통해 강행될 조짐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농산물 협상에 대비하여 주요농산물의 지원정책의 허용근거를 확보하고 비교역대상 주요농산물의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추진하며 장기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상협력을 추진하는 협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국내대책으로서 수입자유화 확대, 국내 보조감축에 따른 농민손실보상, 투자확대, 구조조정축진 등에 대한 국내 의견합의 등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상협력과 국내대책도 중요하지만 농수산업 자체가 수입대응력을 갖는 일이다. 생산자인 농어민들이 실의에 처해있고 일부 소비자와 수출관련 종사자들은 농산물 수입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농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수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농수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력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혁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나 EC제국이 그런대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것은 기술혁신에 힘입었던 것이다. 과학과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우리 농업이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잠재성이 보여질때 농수산업 발전은 가능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수산물의 품질개선과 상품성을 높여 국내 소비자를 확보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극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